

우리공화당 입당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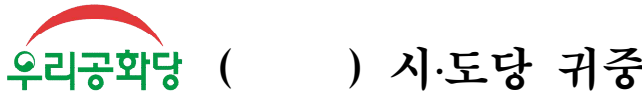
※성명	※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	□□□□□□□-□*****	종교	
			장애여부	□ 예 / □ 아니오
※주소				
연락처	※ 휴대전화			※ 직업
	자택전화			주요
	직장전화			경력
	이메일			SNS

※는 필수 기재사항이며,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
본인은 우리공화당에 입당하고자 이에 입당원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본인		(인 또는 서명)	
----	--	-----------	--



서명대 입당처 작성란			중앙당 접수처 작성란				입당 확정			
서명대 명칭	20		담당 당	20		20		20		
	담 당	담 당		확 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반려	확 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완료 <input type="checkbox"/> 반려	사무 처장	위원 장	

※ 黨內 경선 선거인단 선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입당원서 제출 후,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마다 반드시 중앙당 조직국 또는 해당 시·도당으로 연락하여 변경하셔야 합니다.

※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당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당비정기납부신청서

이체금액 (해당란에표시)	2천원	5천원	1만원	3만원	5만원	기타
가입자 개인정보	가입자	성명 (입당인과 동일인)				
		주민등록번호		□□□□□□□ - □□□□□□□□		
※ 예금주 및 휴대전화 가입자가 입당하는 본인과 동일해야만 당비납부 처리가 가능합니다.						
결제방식 (택 1)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자동이체 (매월 25일 결제)		은행명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휴대전화결제 (매월 5일 결제)		계좌번호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휴대전화결제 (매월 5일 결제)		휴대전화번호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휴대전화결제 (매월 5일 결제)		통신사	<input type="checkbox"/> SKT <input type="checkbox"/> KT <input type="checkbox"/> LGU+			
※ 휴대전화결제 신청시 반드시 소액결제 차단을 해지해 주십시오. 통신사 이동 또는 번호변경시, 또는 당비 취소 요청 시 해당 시·도당으로 꼭 연락하여 주십시오.						
개인정보 활용동의 (미 동의시 당비납부가 되지 않습니다.)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	- 수집 및 이용목적 : 일상적인 정당활동 및 자동이체, 소액결제를 통한 요금 수납 - 수집항목 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결제사명, 계좌번호, 계좌번호, 휴대/유선전화번호 - 보유 및 이용기간 : 수집/이용 동의일부부터 탈당일까지 -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.				
	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	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금융결제원, 효성에프엠에스㈜, 은행(국민, 우리, 신한, 농협, 하나, SC, 기업, 외환, 씨티, 산업, 새마을, 부산, 대구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, 수협, 신한, 우체국, 동양증권, 삼성증권), 통신사(SK, KT, LGU+, CJ헬로비전), 결제대행사(KG이니시스, KCP), 효성ITX 등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: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동의 사실 통지, 고객센터 운영 -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결제사명, 결제자명, 계좌, 전화번호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(해지일)까지. 단,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-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				
서명	본인서명	본인 :			(인 또는 서명)	

※ 납부한 당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,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세액공제) (정치자금법 제59조 및 조세제한특별법 제76조)